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00. 4. 19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안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제안및회부일자

○ 제 안 : 2000년 4월 1일 제출
○ 회 부 : 2000년 4월 3일

3. 제안이유

○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8조제1항)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시킬 수 있던 조항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조항 강화 (안 제10조제1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 (안 제11조)

○ 군입대에 의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 (안 제11조의2)

○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 (안 제11조의3)
- 휴직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군입대 휴직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

5. 검토의견

○ 인사운영의 실적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등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 근연령도 일부 단축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대통령령 제15956호)이 개정(1998년 12월 31일) 됨에 따라

○ 비상계획 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 (총무처예규 제326호, 97.12.29) 에 의하도록 하고,

○ 비상계획 업무담당 5급상당이하 근무상한 연령을 55세로 하는 등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